

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

국무총리지시제 2 호

(720-2153)

1985. 3. 14.

수 신 수신처참조

제 목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지침

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각기관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업무를  
통할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별첨과  
같이 청소년유해업소단속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청소년유해업소단속지침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내부부, 법무부, 문교부, 보건사회부, 서울특별시, 치안본부,  
사회정화위원회

##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지침

### 목 적

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업무를 통괄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함.

### 대상업종

- 식품접객업소
  - 유흥음식점, 대중음식점, 간이주점, 인삼찜집, 다방
- 숙박업소
  - 여관, 여인숙
- 위생오락업소
  - 이발업소, 유기장
- 안마시술소

## 기본방향

-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각부처 자체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업종별 자율정화를 병행한다.
-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주관부처를 지정, 일원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지역별, 시기별로 단속의 중점을 달리하여 집중 실시함으로써 위반 사례를 근절 시키는데 주력한다.
- 각부처 자체단속은 합동단속시 미진한 그 부처 고유업무 분야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고, 합동단속과 유기적인 연계하여 조화있게 추진하여 단속의 시기, 대상업소 등에 중복이 없도록 한다.
- 업소의 자율정화는 업종별로 지도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되 지도와 계몽에 중점을 둔다.
- 단속, 결과통보, 행정조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강화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.

## 세부계획

### 가. 합동단속

#### ○ 평상시 합동단속

- 검찰주관 합동단속반 편성
  - 관할지청 소년담당검사 주관하에 경찰, 시·구청직원, 교육청직원(중·고교사 포함)으로 상설 합동단속반 편성
- 단계별 중점단속지역 설정 실시

단 계 별	중점단속지역	단속회수
1 단 계	학교주변, 주거지역	월 2 회
2 단 계	상업지역	”

- 학교주변 및 주거지역 유해업소가 완전정화 되었다고 판단될때 법무부가 총리실과 협의하여 2 단계로 이행
- 위반사례가 있거나 위반우려가 큰 업소를 파악하여 우선단속

○ 특정시기 합동단속

- 검찰주관의 평상시 합동단속반 활용
- 대입학력고사 직후, 연말, 졸업 및 입학시기등  
청소년들의 기강이 헤이해지기 쉬운 기간

나. 자체단속

- 내무부, 문교부, 보건사회부, 서울특별시등 각각 주관
- 합동단속의 대상, 시기, 지역 등을 감안하여  
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각 부처 고유업무에 대한  
자체단속 실시 (대검찰청과 협조)

다. 업종별 자율정화 권장

- 업종별 자율지도반 편성
  - 요식업중앙회, 다방조합, 숙박업협회,  
이용협회 주관
  - 자율단체의 간부와 덕망있는 업주로 구성

- 자율지도반 운영
  - 자율지도반 표시
    - 완장착용 ("자율지도원") 등 식별할수 있는 표지소지
  - 중점활동기간
    - 평상시 주1회 이상 계속 지도
    - 취약시기에는 업소별 주2회 이상 지도
  - 중점지도사항
    - 업소주변 청소년선도
    - 업소출입자 주민등록증 확인지도
    - 업태위반행위, 영업시간 준수사항 계도

라.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

- 단속관계 기관은 검찰, 경찰주관 합동단속에 적극참여
- 단속주관 기관은 단속후 즉시 단속결과를 영업허가 기관에 통보

- 영업허가 기관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단속 주관기관에 통보
- 영업허가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 계속감시

마. 처벌의 강화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(관계법령개정추진)

-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강화
  - 무허가영업,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허용 및 주류판매등의 경우 체형 및 벌금강화
- 행정처분의 신속화 및 실효성 확보
  - 적발당시 업주가 자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
  - 무허가영업에 대한 직접강제규정 신설
    - 업소폐쇄, 업소시설의 봉인, 철거, 물품의 수거 등

-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 제한
  - 대상업종 : 유흥음식점, 전문음식점, 간이주점  
인삼찻집
  - 제한지역 : 주거환경, 학교주변 보호 등  
공익상 필요한 경우

바. 유해환경상설신고센터 운영

- 각 시·도 경찰국(12개소)에 설치  
각 경찰서와 연결
- 신고센터운영 및 합동단속요원 확보
  - 센터운영요원(치안본부)
  - 합동단속이 필요한 시·군·구청 직원  
(보건사회부)
- 신고내용에 따라 구분처리
  - 폭행, 미성년자출입 허용등 경찰단독으로  
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순찰차나 관할경찰서에  
하명처리
  - 업태위반, 무허가영업의 경우 관할 경찰서와  
시·군·구청에 통보 합동단속

## 행정사항

### ○ 합동단속 결과보고

- 평상시 합동단속 : 매분기 익월 15일
- 특정시기 합동단속 : 단속기간 만료후 즉시